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3. 9. 3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” 를 “서울특별시
중구·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울특별시 종로구·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” 로 함
(안 제2조제1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” 를
“서울특별시 중구·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울특별시 종로구·서울특별시 서대문구
에서” 로 한다.